

강원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의원 입법 동향

◆ 강원도의회 제311회 임시회(6.8.~6.17.)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.

◆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: <https://council.gangwon.kr/minutes/bill/search/accept.do>

제311회 임시회 조례안 처리 목록

◆ 총 건 : 의원발의 2건

상 임 위 원 회	조례안명	발의자	본 회 의 처리결과 (22. 06. 17.)
경제건설 위원회 (2)	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박인균 의원	원안가결
	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조성호 의원	원안가결

《 참고 : 조례 제정절차 등 》

- (지방자치단체 이송) :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
 - * 제311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: 2022. 6. 17.(금)
- (지방자치단체장 조례안 공포) :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
- (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) :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
- (재의요구 조례안 확정) :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
- (조례 효력발생) :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(단, 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)
- ※ 관련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

제31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소개

■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■ 대표발의 : 박인균 의원(기획행정위원회 · 더불어민주당 · 강릉2)

■ 공동발의 : 장덕수 의원(사회문화위원회 · 더불어민주당 · 정선1),
김상용 의원(경제건설위원회 · 더불어민주당 · 삼척1),
나일주 의원(경제건설위원회 · 더불어민주당 · 정선2),
정유선 의원(교육위원회 · 더불어민주당 · 비례),

김병석 의원(사회문화위원회 · 더불어민주당 · 원주4),
김혁동 의원(교육위원회 · 더불어민주당 · 태백2),
신명순 의원(농림수산위원회 · 더불어민주당 · 영월2),
조성호 의원(경제건설위원회 · 더불어민주당 · 원주7)

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 및 근로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「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이 발의됐다.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① 강원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강원도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예방대책을 매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·연구,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,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·연구,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,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③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. ④ 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지도사,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기업체,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강원도 내 사업장 지도,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,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⑤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강원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. ⑥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⑦ 도지사는 산업재해예방대책의 수립·평가,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추진,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·운영,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,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및 강원도 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·운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

박인균 의원



장덕수 의원



김병석 의원



김상용 의원



김혁동 의원



나일주 의원



신명순 의원



정유선 의원



조성호 의원

■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■ 대표발의 : 조성호 의원(경제건설위원회 · 더불어민주당 · 원주7)

■ 공동발의 : 정수진 의원(사회문화위원회 · 더불어민주당 · 비례), 정유선 의원(교육위원회 · 더불어민주당 · 비례)
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유지를 통하여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「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이 발의됐다.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. ② 강원도와 출자·출연기관 및 기업·단체 등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(임차를 포함한다)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. ③ 도지사는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8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비용, 충전시설 구축 비용,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다. ④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5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및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가 설치한 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의 소유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.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(이하 “기축시설”이라 한다)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국가, 도지사, 시장·군수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 및 영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인 경우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, 그 외의 기축시설인 경우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. ⑥ 충전시설은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며,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. ⑦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시장·군수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

조성호 의원



정수진 의원



정유선 의원